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12 선고 2017가합531586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기술보증기금

피고1. 주식회사 A

2. B

3. 주식회사 스카이라프

변론 종결2018. 3. 15.

판결 선고2018. 4. 12.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4,632,722원 및 그 중 224,182,689원에 대하여 2017. 2. 24.부터 2017. 6. 29.까지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별지 특허권목록 기재 각 특허권에 관하여,

가. 피고 주식회사 A와 피고 주식회사 스카이라프 사이에 2016. 11. 30.체결된 양도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주식회사 스카이라프는 피고 주식회사 A에게 특허청2016. 11. 30. 접수 C로 마친 권리의 전부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등

1) 원고는 2012. 8. 23.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고 한다)와 사이에 피고 A의 농협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보증원금 108,000,000원, 보증기간 2012. 8. 23.부터 2013. 8. 21.까지(이후 체결된 보증기간 연장약정에 따라 2017. 8. 18.까지로 연장됨), 원고의 보증채무 이행으로 인한 구상금채권에 대한 약정 연체이율 연 10%로 각 정하여 보증하기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1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제1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2) 또한 원고는 2013. 5. 3. 피고 A와 사이에 피고 A의 농협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보증원금 252,000,000원, 보증기간 2013. 5. 3.부터 2020. 6. 29.까지, 원고의 보증채무 이행으로 인한 구상금채권에 대한 약정 연체이율 연 10%로 각 정하여 보증하기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2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제2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3) 또한, 피고 A는 이 사건 제1, 2신용보증약정(이하, 동 약정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 체결 당시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4) 피고 A는 이 사건 제1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이용하여 2012. 8. 23. 농협은행으로부터 120,000,000원, 이 사건 제2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이용하여 2013. 5. 7. 농협은행으로부터 280,000,000원을 각 대출받았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 1) 피고 A는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2016. 10. 29. 이후 위 각 대출금에 대한 이자의 지급을 연체하다가 2016. 11. 30. 원금마저 연체하였고, 농협은행은 2016. 12. 29. 원고에게 2016. 11. 30.자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음을 통지하였다.
- 2)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7. 2. 24. 농협은행에 피고 A의 대출원리금 225,070,819원(= 이 사건 제1신용보증약정의 대출원리금 92,936,321원 + 이 사건 제2신용보증약정의 대출원리금 132,134,498원)을 대위변제하였다.
- 3) 한편 원고는 2017. 2. 24. 이 사건 제1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미환급 보증료 888,130원을 위 대위변제로 발생한 구상금채권의 변제에 충당하였고, 2017. 3. 30. 위 구상금채권의 보전 등을 위하여 449,790원의 비용을 지출하였다.

다. 피고 A의 특허권 처분행위

피고 A는 2016. 11. 30.경 피고 주식회사 스카이라이프(이하 '피고 스카이라이프'라고 한다)와 사이에 별지 특허권목록 기재 각 특허권(이하, 위 각 특허권을 통틀어 '이 사건 특허권'이라 한다)을 피고 스카이라이프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고(이하, 위 약정을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 특허권에 관하여 피고 스카이라이프에게 각 특허청 2016. 11. 30. 접수 C로 이 사건 양도계약을 원인으로 한 권리의 전부이전등록(이하 '이 사건 이전등록'이라고 한다)을 마쳤다.

라. 피고 A의 재산상태

피고 A는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일인 2016. 11. 30. 당시 앞서 본 농협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이외에도 IBK기업은행에 대한 99,062,000원 상당의 채무, 농협은행에 대한 50,172,000원 상당의 채무,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한 128,960,000원 상당의 채무, D에 대한 300,000,000원 상당의 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이 사건 특허권 이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함, 이하 같다), 을가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당원의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 B에 대한 청구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기한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 224,632,722원[= 총 대위변제금 225,070,819원 - 일부 변제금 888,130원 + 위 일부변제금에 대한 1일 간 확정지연손해금 243원(= 888,130원 × 약정 지연이율 연 10% × 1/365, 원 미만 버림) + 법적절차비용 449,790원] 및 이 중 잔존 대위변제금 224,182,689원(= 총 대위변제금 225,070,819원 - 일부회수금 888,130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7. 2.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최후 송달일인 2017. 6. 29.까지 약정 지연이율인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A와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다.

3. 피고 스카리아프에 대한 청구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비록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일인 2016. 11. 30. 당시에는 아직 발생하지 아니한 상태였으나, 이미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그에 따라 대출이 실행되어 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 A는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2016. 10. 29. 이후 위 각 대출금에 대한 이자의 지급을 연체하다가 2016. 11. 30. 원금마저 연체하였고, 농협은행은 2016. 12. 29. 원고에게 2016. 11. 30.자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음을 통지하였던 사실, 그로부터 약 3개월 이후인 2017. 2. 24. 원고의 대위변제에 따라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발생하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A가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가까운 장래에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위 구상금채권이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등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초한 대출금채무 이외에도 합계금 578,194,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태에서 사실상 유일한 적극재산인 이 사건 특허권에 관하여 피고 스카이라프와 사이에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스카이라프에 이를 양도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의 부족 내지 상실을 초래하였다고 할 것이니, 이 사건 양도계약은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나아가 채무자인 피고 A의 사해의사는 추정되고, 수익자인 피고 스카이라프의 악의 또한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피고 스카이라프는 피고 A에게 이 사건 특허권에 관하여 마친 이 사건 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결국, 원고의 피고 스카이라프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박원규

판사김수연

판사김배현

별지